

◎포항국토관리사무소고시 제2023-299호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피허가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른 고지서와 납부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 1. 제 목 : 도로점용료 체납자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 2. 공고기간 : 2023.12.26.~2024.1.10.(15일간)
- 3. 공고대상 : 하단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 4. 공고내용

가. **납부기한 내 (~2023.12.28.)** 체납된 도로점용료 미납시 「도로법」 제69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강제징수 절차 착수

나. 송달내용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공고기간 내

- 제출내용 : 의견진술서, 증빙자료

- 제출방법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방문 및 팩스(054.260.2599), 등기우편 이용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260.255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순번	이름	실명번호	주소	체납금액	비고
1	김아○	940423-2*****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3번길 10	1,254,200원	
2	고인○	640214-2*****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3번길 10	1,254,200원	

끝.